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춘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김춘례 의원(1명)

찬 성 자 :김경우, 김기대, 김소영,
김인제, 김정태, 김제리,
김태수, 김희걸, 문장길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양민규, 유 용, 유정희,
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
장상기, 전병주, 최 선,
최영주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-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임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음.
-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(안 제7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”를 “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- ② (생 략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<u>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